주식담보대출 거래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주식담보대출 거래를 하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해하는 위험 아이콘


자기책임원칙


원금초과손실가능


청약철회권 행사가능


환율변동위험


반대매매 발생 가능성

개요

- 토스증권 주식담보대출(증권담보대출)이란 고객이 토스증권 기본계좌에 보유(결제기준)한 주식 중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식(예탁증권 포함)과 상장지수펀드(ETF)를 담보로 제공하고 고객에게 원화로 현금을 대출해주는 거래를 말합니다.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주식담보대출거래는 고객님이 보유한 증권(주식, 펀드,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거래를 말합니다.
- 대출거래 시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할 때와 비교 시 **대출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 **(반대매매(강제판매) 위험)** 1)만기 미상환 또는 2)담보유지비율(140%) 미만인 경우,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반대매매(강제판매)에 따른 손실 위험
 - **(레버리지 위험)** 대출금으로 추가 주식 매수 시 훨씬 많은 주식을 매매하게 되므로 시장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의 손실 가능
- <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 시 등에 반대매매(강제판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 또한 **대출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대출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생가능한 불이익

-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기 미상환 시 담보증권이 반대매매(강제판매)**되며, **반대매매**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에 대한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인 140% 미만인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강제판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강제판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강제판매) 사유

구분	내용
① 담보부족 반대매매	•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140%) 미만인 경우, 추가 담보를 납부해야 하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반대 매매 발생.** 이 경우 **반대매매 수량은 담보부족금액 기준**으로 계산.
② 만기미상환 반대매매	• **만기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반대매매 발생.** 이 경우, **반대매매 수량은 담보 부족 금액이 아닌 원리금(원금+이자) 기준으로 계산.**
③ 외화미수 반대매매	• 미수거래 후 미수금액을 결제일(D+2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외화 미수금액 발생 후 다음 거래일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반대매매 수량은 결제일까지의 이자 및 매도 제세금 포함한 외화 미수금액 기준으로 계산** ※ 미수거래 반대매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미수거래 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대매매 순서

- 반대매매(강제판매) 사유 발생 **다음 거래일에 ①고객계좌 예탁 원화현금 → ②고객계좌 예탁 외화현금 → ③담보증권* → ④담보 외 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반대매매를 통해 채무를 충당**
 * 담보증권 반대매매(강제판매)로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거나,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이 불가한 경우 외화 미수금액 발생

■ 반대매매 수량 산정 기준

- 각종 거래비용을 제외한 매도대금 전액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합니다.
- 결제 예정금액(수도결제), 미상환 대출금, 현금미수금 등을 반영하여 담보부족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합니다.

■ 담보부족 반대매매

- 반대매매 수량 = $\dfrac{\text{담보부족금액*}}{\text{(반대매매기준가격* x 담보유지비율) - 전일종가*}}$
- 담보부족금액 = (대출금액 x 담보유지비율) – 담보평가금액
- 반대매매 기준 가격 = 전일종가 x (1–종목등급별 할인율) ÷ (1+수수료율) ÷ (1+대출이자비율*) x (기준환율 x (1-환율할인율))
- 전일종가 = 전일종가 x 기준환율
- 대출이자비율 = 이자 / 대출금액

■ 만기미상환 반대매매

- 반대매매(강제판매)수량 = $\dfrac{\text{대출금액 + 이자}}{\text{반대매매기준가격*}}$
- 반대매매 기준가격 = [전일종가 × (1-종목등급별 할인율) ÷ (1+수수료율) × {기준환율×(1-환율할인율)}]

Case 01. 담보부족 반대매매 → 주가 하락 & 원/달러 환율 하락

- 종가 $200 A주식 50주 (담보평가금액 $10,000(1,400만원)) 담보로 대출금 910만원(대출비율 65%) 실행 후 대출금 전액 A주식 $200에 추가 매수(32.5주)하였으나, 주가 하락 및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반대매매가 실행될 경우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인 경우)

※ A등급 종목등급별 할인율 : 15%
※ 각종 거래비용 (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 원/달러 환율 (대출시점 : 1,400원 → 담보부족 발생시점 : 1,300원 가정)
※ 최근일 종가 기준 15% 할인된 가격으로 수량 계산 시 아래와 같이 담보증권 21주 매도

* 담보비율 = 담보평가금액/대출금

날짜	주식가격	담보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대출거래 원/달러 환율: 1,400원	200달러 (280,000원)	23,100,000원	253%	
D일, 7시 원/달러 환율: 1,400원	115달러 (161,000원)	13,282,500원	145%	
D일, 16시 30분 원/달러 환율: 1,300원	115달러 (149,500원)	12,333,750원	135%	담보유지비율(140%) 미만 및 추가담보납부요구
D+1일 원/달러 환율: 1,300원	115달러 (149,500원)	12,333,750원	135%	추가담보 미납 담보유지비율(140%) 기준 필요한 담보평가금액은 1,274 만원으로 406,250원 담보부족
D+2일	• **반대매매 기준가격을 최근일 종가($115) 대비 15% 하락한 가격과 환율할인율 5% 적용된 가격으로 계산** • 반대매매 수량 = $\frac{(9{,}100{,}000\times1.4)-12{,}333{,}750}{((115\times0.85)\times(1{,}300\times0.95)\times1.4)-(115\times1{,}300)}$ = 20.82주 → 담보증권 50주 중 21주 반대매매(강제판매) 필요. * 반대매매는 온주로만 매도 진행 (소수점 절상 처리) • 반대매매 수량(21주)이 97.75달러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담보유지비율(140%)을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2,668,575 원(21주 × 97.75달러 × 1,300원) 으로 담보부족금액(406,250원)의 약7.57배 수준** • 반대매매 주문은 정규장 시작시간인 23:20(서머타임은 22:20)에 실행 (정규장 시작시간 10분전까지 현금입금 또는 주식입고 또는 담보증권 매도 또는 대출금 현금상환을 통해 담보부족 해소 가능)			

Case 02. 만기미상환 반대매매

- 해외주식 A등급 종목 50주 보유, 매수가 $200 (담보평가금액 $10,000(1,000만원)),
 대출금 6,500,000원(대출비율 65%)으로 동일종목 32.5주 추가매수하였으나, 만기상환일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인 경우)

※ A등급 종목등급별 할인율 : 15%
※ 각종 거래비용 (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 원/달러 환율 1,000원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

▪ 1) 만기일 주가 > 대출실행시점 주가

- 최근일 종가 기준 15% 할인된 가격으로 수량 계산 시 아래와 같이 담보증권 27주 매도

* 담보비율 = 담보평가금액/대출금

날짜	주식가격	담보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만기일	300달러	24,750,000원	380%	담보평가금액 : 82.5주x$200X1,000원
D+1일 (반대매매)	• **반대매매 기준가격을 최근일 종가($300) 대비 15% 하락한 가격과 환율할인율 5% 적용된 가격으로 계산** • 반대매매 수량 = $\frac{6,500,000}{(300x0.85)\ x\ (1,000x0.95)}$ =26.83주 → **담보증권 50주 중 27주 반대매매(강제판매) 필요.** * 반대매매는 온주로만 매도 진행 (소수점 절상 처리) • 담보증권 27주가 $295에 반대매매 주문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결제일에 대출금에서 650만원 변제되고 남은 매도정산금액은 외화 예수금 $1,465로 입금 처리			

▪ (2) 만기일 주가 < 대출실행시점 주가

- 최근일 종가 기준 15% 할인된 가격으로 수량 계산 시 아래와 같이 담보증권 50주 매도

* 담보비율 = 담보평가금액/대출금

날짜	주식가격	담보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만기일	150달러	12,375,000원	190%	
D+1일 (반대매매)	• **반대매매 기준가격을 최근일 종가($150) 대비 15% 하락한 가격과 환율할인율 5% 적용된 가격으로 계산** • 반대매매 수량 = $\frac{6,500,000}{(150x0.85)\ x\ (1,000x0.95)}$ =53.66주 → **담보증권 50주 전량 반대매매(강제판매) 필요.** * 반대매매는 온주로만 매도 진행 (소수점 절상 처리) • 담보주식수 50주 전량이 $145에 반대매매 주문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결제일에 대출금에서 650만원 변제되고 남은 매도정산금액은 외화 예수금 $750으로 입금 처리			

Case 03. 담보부족 반대매매 및 미수 반대매매

- 해외주식 A등급 종목 50주 보유, 매수가 $200 (담보평가금액 $10,000(1,000만원), 대출금 6,500,000원(대출비율 65%)으로 대출금 전액 A주식 $200(20만원)에 추가 매수(32.5주)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가 실행된 경우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인 경우)

※ A등급 종목등급별 할인율 : 15%
※ 각종 거래비용 (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
※ 원/달러 환율 1,000원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
※ 전일 종가 기준 15% 할인된 가격으로 수량 계산 시 아래와 같이 담보증권 50주 매도 및 외화 미수 발생에 따른 담보외증권 32주 추가 매도

* 담보비율 = 담보평가금액/대출금

날짜	주식가격	담보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대출거래	200달러 (200,000원)	16,500,000원	253%	
D일	100달러 (100,000원)	8,250,000원	126%	담보유지비율(140%) 미만 및 추가담보 납부요구
D+1일	90달러 (90,000원)	7,425,000원	114%	추가담보 미납 담보유지비율(140%) 기준 필요한 담보평가금액은 910만원으로 167.5 만원 담보부족
D+2일	• 반대매매 주문은 정규장 시작시간인 23:20(서머타임은 22:20)에 실행 (정규장 시작시간 10분전까지 현금입금 또는 주식입고 또는 담보증권 매도 또는 대출금 현금상환을 통해 담보부족 해소 필요) • **반대매매 기준가격을 최근일 종가($90) 대비 15% 하락한 가격과 환율할인율 5% 적용된 가격으로 계산** • 반대매매 수량 = $\frac{(6,500,000 \times 1.4) - 7,425,000}{((90 \times 0.85) \times (1,000 \times 0.95) \times 1.4) - (90 \times 1,000)}$ = 142.61주 → 담보증권 50주 전량 반대매매(강제판매) 필요. * 반대매매는 온주로만 매도 진행 (소수점 절상 처리) • **담보증권 반대매매로 대출금(650만원) 전액상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제일에(D+2일) 미상환 대출금(250만원)은 외화 현금미수금(-$2,500) 처리** ※ 미수 반대매매(강제판매) 절차 • 절차 및 수량 계산 방법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별첨> 참고 **◎ 반대매매 기준가격을 최근일 종가($80) 대비 15% 하락한 가격으로 계산** • 반대매매 수량 = $\frac{\$2,500}{(\$80 \times 0.85)}$ = 36.76 주 → 담보외증권 32주 전량 반대매매(강제판매) 필요. • 담보외증권 32주가 $79에 반대매매 주문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결제일에 미수금($2,500)이 상환되고 계좌에는 A주식 0.5주 와 외화예수금 $28만 남게됩니다.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 매도상환 또는 반대매매(강제판매) 후 **미상환 대출금이 발생할 경우 결제일에 외화 현금미수로 처리**되고 해당일에 예수금이 없거나 미수 발생으로 담보외 증권이 추가로 반대매매(강제판매) 되어도 **미수금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미수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이자율은 해외주식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른 미수금액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과 동일합니다.
-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대출거래 만기 연장 불가,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알림

- 대출 약정 체결 · 실행 · 상환 · 반대매매 등 대출거래 관련 **주요내용 통지는 앱 푸시/알림, 알림톡(카카오톡) or SMS)로 발송됩니다. (주말/공휴일 발송 포함)**

* 고객님께서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거래 관련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고객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객센터(☎1599-7987)**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험

- 주식담보대출(증권담보대출)은 **만기일까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나 담보유지비율(140%)미만인 당일(D일)을 포함하여 익거래일(D+1일)까지 현금입금, 주식입고, 담보주식 매도의 방법 등으로 담보부족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다음 거래일에 반대매매(강제판매)로서 상환**합니다. 이 때, **반대매매 금액은 담보부족 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
- 주식담보대출은 예측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140%)에 미만인 경우, 추가담보를 납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강제판매)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 대출거래계좌의 담보비율이 **일정비율(170%) 이하인 경우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금 및 출고가 제한됨에 따라 대출신청금액 전액이 출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대출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대출거래가 있는 고객은 매수주문, 추가대출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회사의 추가담보 납부요구 등 통지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소,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추가담보 납부기간 동안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담보부족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담보부족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자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통합공시시스템 → 전체메뉴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예탁증권담보융자)

민원 · 상담이 빈번한 숙지 필요사항

Q1.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된 모든 증권이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 일부 증권(예 : 증거금률 100%인 증권)은 대출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의 대출거래 가능 여부는 토스증권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2. 대출거래 시 담보유지비율(140%) 미만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담보유지비율(140%) 미만인 당일(D일)을 포함하여 **익거래일(D+1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 수량만큼 회사가 반대매매(강제판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강제판매) 수량은 담보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반대매매(강제판매) 시 A~B등급 주식은 전일 종가의 15%, 기타 등급 주식은 전일 종가의 20%로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강제판매) 수량이 산정됩니다. **매도(처분)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초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매매(강제판매)를 피하려면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부족 반대매매(강제판매)는 해외주식의 경우 미국 정규장 시장에 접수되어 매도됩니다.

Q3. 담보유지비율(140%) 미만으로 담보부족 통보를 받은 경우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담보유지비율(140%) 미만인 당일(D일)을 포함하여 **익거래일(D+1일)까지 담보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반대매매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담보부족을 해소하는 방법은 i) 추가 담보를 납부하거나 ii) 대출금을 상환하여 담보유지비율을 맞추는 방법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i) 추가 담보 납부는 담보로 인정하는 현금 입금, 주식 입고를 인정합니다.
 ii) 대출금을 상환하여 담보유지비율을 맞추는 방법은 계좌내 보유한 현금으로 **현금상환, 담보증권 매도상환(체결기준)**을 인정합니다. 현금상환은 상환시점의 담보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담보증권 매도상환은 매도 체결 시 담보부족이 해소될 수 있을 만큼 매도해야 담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반대매매일에 해외주식의 경우 23시 20분(서머타임인 경우 22시 20분까지) 까지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강제판매)가 진행됩니다.)

Q4. 반대매매(강제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 **i) 상환기일 미상환 시 ii) 담보유지비율(140%) 미만인 당일(D일)을 포함하여 익거래일(D+1일)까지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iii) 미수거래 결제일에 미수금액을 갚지 않는 경우에 반대매매(강제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증권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징구 없이 반대매매(강제판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앱 알림/푸시 및 (알림톡 or SMS)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Q5. 대출거래를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 만기 전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기의 연장은 만기연장 시점에 대출가능종목으로 평가된 종목에 한하여 이자납입 후 1회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된 90일은 기존 대출만기일이 아닌 연장을 신청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단, 담보부족계좌 및 연체정보 등이 있는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합니다.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본 금융상품에 대한 문의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토스증권 고객센터(02-1599-7987)를 통해 상담 가능하며, 민원·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전자민원 창구>전자민원 신청) 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거래 관련 주요 내용

상품명

- 주식담보대출(증권담보대출)

상품내용

- 토스증권 주식담보대출(증권담보대출)이란 고객이 **토스증권 기본계좌에 보유(결제기준)한 주식 중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식(예탁증권 포함)과 상장지수펀드(ETF)를 담보로 제공하고 고객에게 원화로 현금을 대출해주는 거래**를 말합니다.

대상 고객

- **토스증권 기본계좌가 있는 개인**
 (단,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담보대출(추가 실행, 만기 연장 포함) 불가)
- [주식담보대출 신청 불가 대상 기준]
 - 미성년자
 - 토스증권 임직원
 - NICE 기준 신용불량상태 고객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고객
 - 부실거래자 및 채무불이행 고객
 -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고객
 - 사고계좌 등록 고객
 - 토스증권 및 관계사 최대주주/등기임원/특수관계인
 - 휴대폰 번호 미등록 고객
 - 이메일 주소 미등록 고객
 - 주소(자택 or 회사) 미등록 고객

대출 약정

- 대출 약정은 토스증권에 **본인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신규 개설한 고객**으로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체결한 고객이어야 하며, 주식담보대출약관과 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숙지 후 토스증권 앱을 통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출약정은 고객이 **대출약정을 해지하기 전까지 대출한도 내에서 계속하여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한 이후에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토스증권 앱 → 내 계좌 → 주식담보대출 → 관리 > 대출 해지하기]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인지세 및 대출기간

① 고객별 대출한도 : 최소 100만원 ~ 최대 5천만원
(대출금 지급 통화는 원화(₩)이며, 최소 100만원부터 대출가능)

② 인지세: 고객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

대출약정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회사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계약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약정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약정해지 및 한도 감액시에도 인지세는 환불 불가합니다.

③ 대출기간

- **대출기간 : 90일** (단, 만기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지정됩니다.)
 * **1회에 한해 연장신청시점부터 90일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된 90일은 기존 대출만기일이 아닌 연장을 신청한 시점부터 기산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연장 여부는 고객 및 담보에 대한 당사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기연장

- 만기 연장은 **국내시간 기준 00:30 ~ 23:30사이 신청 가능**하고 **만기일 30일 전부터 만기일까지 토스증권 앱을 이용**하여 직접 연장처리가 가능합니다.
- **만기 연장 관련 고객안내는 만기일 10일 전, 5일 전, 전일과 당일 총 4번 안내가 실시되며, 안내일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에도 안내**됩니다.
 * 안내 매체: **토스증권 앱 알림/푸시, (알림톡 or SMS)**
- 대출 **만기 연장시점에 담보유지비율(140%) 이상 계좌이고, 아래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객이 직접 **토스증권 앱을 통해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종목등급 F등급 종목
 - 담보부족 발생 계좌
 - 대출이자 미납 계좌
 - NICE평가정보 기준 신용불량상태 고객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고객
 - 부실거래자 및 채무불이행 고객
 -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고객
 - 사고 등록 계좌
 - 휴대폰 번호 미등록 고객
 - 이메일 주소 미등록 고객
 - 주소(자택 or 회사) 미등록 고객
- 단, **만기연장 신청 시 대출금 사용 기간에 대한 이자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만기연장은 불가**합니다.

대출거래 대상종목 및 대출비율

■ ① 대출거래 대상 종목 (담보증권)

-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한 주식 (예탁증권 포함) 또는 상장지수펀드(ETF)**
 - **종목등급 E /F등급 평가종목은 대출 불가**
 - **소수점 주식이나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종목은 대출 불가**

- [대출거래 대상종목 확인 방법]
 - MTS : 토스증권 앱 → 증권 → 개별종목 → 종목명 옆 대출비율
 - WTS : 토스증권 WTS → 증권 → 개별종목 → 종목명 옆 대출비율

■ ② 대출 비율

구분	종목등급	기준	대출비율
해외주식	A등급	전일종가	65%
	B등급		65%
	C등급		65%
	D등급		65%
	E등급		0% (대출불가)
	F등급		0% (대출불가)

* 담보제공 적정등급 : A~D 등급 (* 단, 해외주식 권리 발생 시 입고, 출고, 매수, 매도 제한으로 등록된 종목의 경우 대출 실행 불가)

이자율 및 이자징수일

■ ① 이자율 및 적용기준

구분	1일~30일	31일~60일	61~90일	90일 초과
이자율	6.90%	7.90%	8.90%	9.20%

- 대출이자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 기준금리 : 직전 3개월 평균 CD수익률 (※ CD수익률에 대해서는 <참고2> CD수익률 설명서 확인)
-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을 반영
- 매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공시 : 금융투자협회

 * 전자공시시스템(https://dis.kofia.or.kr)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자율 → 기준 및 가산금리
- 이자율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 (https://corp.tossinvest.com) → 고객센터 → 증권 업무 안내 → 대출

■ ② 이자 징수일

- 만기상환 : 만기일에 대출 원금과 이자가 함께 상환 처리
- 매도상환 : 담보증권 매도 결제일에 대출 원금과 이자가 함께 상환 처리
- 현금상환 : 만기일 이전이라도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원금과 원금에 해당되는 이자를 함께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을 완료한 날 즉시 상환 처리

- 현금상환: 한국시간 기준 00:30~23:30까지 가능, 만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 이자징수는 만기상환, 매도상환, 현금상환시에 징구되며, **고객이 별도로 이자상환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자 상환은 이자상환 시점에 조회된 금액에 대해 전액만 상환 가능하며, 일부 금액만 선택하여 상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③ 이자율 적용방식: [체차법]으로 기간별 차등적용

- 적용방식(소급법, 체차법, 단일법) 대해서는 부록(용어안내) 참고

<예시> 대출이자 : 6월1일 ~ 8월29일 (대출기간 90일) 대출금 1천만원 사용 시(기간형, 체차법 적용)
* 대출이자율 1~30일 : 6.9%, 31~ 60일 : 7.9%, 61~90일 : 8.9%, 90일 초과 : 9.2%

※ 계산식 : 대출금액 X 기간별 이자율 X 대출일수/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이자징수일	이자금액	계산식
만기상환 8월 29일	192,355원	(10,000,000원 x 6.9% x 30/365) + (10,000,000원 x 7.9% x 30/365) + (10,000,000원 x 8.9% x 29/365)
매도상환 체결 6월 30일	58,876원	(10,000,000원 x 6.9% x 30/365) + (10,000,000원 x 7.9% x 1/365)
반대매매 (강제판매) 주문 체결 8월 22일	185,040원	(10,000,000원 x 6.9% x 30/365) + (10,000,000원 x 7.9% x 30/365) + (10,000,000원 x 8.9% x 26 / 365) * 8월 25일 결제일로 가정 (결제일까지 주말 포함)

* 대출일 불산입·상환일 산입, 원미만 절사, 매도상환/반대매매의 경우, 결제일 기준 이자 계산

■ ④ 연체 이자율

- 미수금액 발생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제이자율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른 미수금액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과 동일합니다.

담보의 제공

-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해외주식(예탁증권 포함) 및 해외상장지수펀드(ETF)를 담보로 제공받으며. 담보 평가 시 고객이 보유한 원화·외화 예수금과 그 외 계좌 내 담보로 국내주식(예탁증권 포함) 및 국내상장지수펀드 (ETF)도 담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 단, 담보증권의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조치, 불공정거래의 우려 등으로 인해 회사가 사전에 홈페이지에 안내한 종목 등은 담보 제외

담보의 관리

- 계좌의 담보비율(=담보평가금액/대출금액)이 담보유지비율(140%)미만인 경우, 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만큼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 **추가납입 방법은 매도상환, 현금상환, 주식 입고, 외화/원화 현금입금이 가능합니다. 주식입고는 담보평가대상 종목만 담보부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담보평가금액은 **증권의 평가금액(해외증권은 당일 기준 환율로 계산한 평가금액)과 원화 예수금, 당일 기준환율로 계산한 외화 예수금(USD)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① 담보유지비율

- **담보유지비율 : 140% (단, 담보비율이 170% 이하인 경우, 출금고 제한 적용)**
 * 담보비율은 당일 종가로 평가하며 140% 미만인 경우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
 * **담보평가에서 제외되면 해당 종목의 평가금액은 0원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을 주식입고 하더라도 담보비율을 상승시킬 수 없습니다.
 * **담보비율 170% 초과한 경우에만 출금 및 출고가 가능함에 따라 대출신청금액 전액이 출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추가담보 제공 기간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제공 기간
140% 미만	담보부족요구일을 포함하여 2거래일 이내

- 예시) 계좌내 보유한 해외주식 애플(종목등급 : A등급, 대출비율 65%)의 원화환산금액 500만원을 담보로 325만원을 대출할 경우,
 - 담보평가금액은 825만원이 되고 대출금 325만원 대비 담보비율은 253%가 됩니다.
 - 담보비율(170%)인 552.5만원 초과분인 272.5만원에 대해서 현금 출금 또는 주식 출고가 가능하고, 담보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140%)인 455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담보부족에 따른 추가담보 납부요구가 진행됩니다.
 - 해당일을 포함하여 익거래일(D+1일)까지 추가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담보부족에 따른 반대매매일 예시

목	금	토	일	월
D일	D+1일	휴장	휴장	D+2일
• 16시 30분 담보유지비율 (140%) 미만 발생 • 추가담보 납부요구 통보 1회차	• 16시 30분 담보유지비율 (140%) 연속 미만 발생 • 추가담보 납부요구 통보 2회차			담보부족 반대매매일

■ ③ 대출계좌의 통제 (매수/출금고)

- 담보부족에 따른 **추가담보 납부요구 통보 1회차 이상인 경우 국내주식, 해외주식, 해외채권 매수 및 출금, 출고 불가**합니다.
- 단,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출금, 출고가 가능합니다.
 - 배당 등 권리 발생으로 세금납부 목적의 출금
 - 권리 및 유상청약 등에 따른 권리청약 목적의 출금
 - 환전 등 계좌내에서 발생되는 출금

담보의 평가

■ ① 담보평가 대상 및 평가가격

- **담보평가금액은 체결기준 증권의 평가금액**과 **원화 예수금, 당일 기준환율로 계산한 외화 예수금(USD)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담보평가되는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 NYSE, NASDAQ, AMEX에 상장된 종목 중 당사가 정한 종목이며, 각 시장별 최근일 종가로 평가**합니다.

■ ② 담보부족 산정 및 추가 담보 요구

- **담보부족 산정은 일 3회 실시(7시, 16시 30분, 20시)하며, 16시 30분 기준 담보비율이 140% 미만일 경우, 추가담보 요구**를 앱 알림/푸시, (알림톡 또는 SMS)로 통보합니다. **추가 담보 요구를 2회차 통보받은 후, 해당일을 포함하여 익거래일(D+1일)까지 추가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추가 담보를 납부하여 담보부족 산정 시간에 담보비율이 140% 이상이 되면, 담보 부족이 해소되고, 추가 담보 요구 회차도 0회(초기화)로 변경됩니다.

구분	7시	16시 30분	20시
내용	회차 초기화	추가담보 요구 결정	• 회차 초기화 • 해외주식 시세 정합성 점검 • 권리처리 점검
담보부족 발생시	회차 증가 없음	회차 증가	• 16시30분 해외주식 시세가 미반영 또는 권리처리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0회차 고객 대상으로 0회→ 1회로만 변경
담보 납입 시	회차 초기화	회차 초기화	회차 초기화
담보 부족 안내		발송	0회 →1회 변경된 경우 발송

■ ③ 담보 평가 제외 대상

- 해외채권
- **국내주식(ETF포함)은 대용가가 0원이면 담보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용가 0원의 지정사유가 투자경고 · 투자주의 · 투자위험 종목인 경우 담보로 인정됩니다.**
- 해외주식(ETF 포함)은 회사가 정한 기준일의 종가에 따른 **시가총액 6억 달러($) 미만인 경우 담보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1배 초과(음의 배율 포함) 상장지수펀드(ETF)는 레버리지 비율을 제거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 상장폐지되어 장외거래주식이 될 경우 담보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상환

■ ① 상환 방법

매도상환	• 대출 시 고객이 **지정한 담보증권 종목을 매도 체결하여 결제일에 원리금(대출원금+이자) 상환** • **매도상환시 결제일에 자동 환전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90 ~ 95% 환전 수수료 우대가 적용**됩니다. 단, 외국환은행 사정에 따라 해당 범위보다 높거나 낮은 우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기상환	• 원리금(대출원금 + 이자)을 현금으로 상환
만기상환	• 만기일에 원리금(대출원금+이자)을 현금상환 또는 매도상환 •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강제판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기일(만기일)까지 원리금(대출원금 + 이자)을 직접 갚지 않고 증권계좌에 예수금으로 보유한 경우, 그 다음 거래일에 만기미상환에 따른 반대매매 절차가 실행**되고 이때 당일 출금가능한 원화 또는 외화 예수금 기준에서 현금상환 처리 후 미상환 대출금액에 대해서 반대매매(강제판매) 됩니다. 반대매매(강제판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상환 매체

- 매도상환 : 토스앱, WTS(토스증권PC)
- 현금상환 : 토스앱

■ ③ 상환일

- 매도상환 : 결제일(매도체결일(D)+2거래일)
- 현금상환 : 요청일 즉시

■ ③ 유의사항

- **현금(대출원금 + 이자) 상환의 경우 원금기준 최소 상환금액은 1만원입니다. 단, 미상환 대출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상환만 가능**합니다.
- 현금상환 가능시간은 국내시간 기준 00:30 ~ 23:30 입니다.
- **이자 상환은 이자상환 시점에 조회된 금액에 대해 전액만 상환 가능하며, 일부 금액만 선택하여 상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반대 매매 (강제판매)

■ ① 반대매매 사유

1) 담보부족 반대매매

- **담보유지비율(140%) 미만인 당일을 포함하여 익거래일까지 추가담보 납입 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만기미상환 반대매매

- **주식담보대출 거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

3) 외화미수 반대매매

- **미수거래 후 미수금액을 결제일(D+2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미수거래 반대매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미수거래 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반대매매 사유 발생에 따른 처분 순서

- 회사는 1) 만기미상환 반대매매 또는 2) 담보부족 반대매매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 거래일에 고객 계좌의 자산을 아래 순서에 따라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고객계좌 예탁 원화현금	• 예탁 원화현금은 **출금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 자동상환**
2) 고객계좌 예탁 외화현금	• 예탁 외화현금은 **환전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자동 환전 후 상환** • 자동환전시간 : 반대매매일의 8시 50분경 (수능일, 개장일 : 9시 50분), 23시 20분경 (서머타임인 경우 22시 20분) • **자동 환전 시, 50% 환전 수수료 우대 적용**
3) 담보증권 (해외주식) **4) 담보 외 증권 (해외주식)**	• **해외 주식만 반대매매 대상** • 해외주식 반대매매 실행 시장 : NYSE, NASDAQ, AMEX • 23시 20분(서머타임인 경우 22시 20분)까지 반대매매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강제판매)가 진행 • **반대매매시 결제일에 자동 환전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90 ~ 95% 환전 수수료 우대가 적용.** 단, 외국환은행 사정에 따라 해당 범위보다 높거나 낮은 우대율이 적용될 수 있음 • **반대매매 가격은 직전 체결가 대비 -7% 기준으로 반대매매 주문 실행**

* **자동상환 시점에 고객이 현금상환 시도를 할 경우 보유한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반대매매 금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 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고객은 담보의 추가담보 제공 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금액까지 확인하여 최종담보부족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반대매매 주문 실행을 위해 **반대매매 주문 실행 전 기존 미체결된 모든 매도 주문이 취소**됩니다.
* 상장폐지된 종목의 경우 반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됩니다.

■ ③ 반대매매 수량 산정

1) 반대매매 수량 산정 산식

- 담보부족 반대매매

- 반대매매(강제판매)수량 = $\frac{\text{담보부족금액*}}{\text{(반대매매기준가격* x 담보유지비율) - 전일종가*}}$
 - 담보부족금액 = (대출금액 x 담보유지비율) – 담보평가금액
 - 반대매매 기준가격 = 전일종가 x (1 – 종목등급별 할인율^{가}) ÷ (1 + 수수료율) ÷ (1 + 대출이자비율*) x (기준환율^{나} x (1 – 환율할인율^{다}))
 - 전일종가 = 전일종가 x 기준환율
 - 대출이자비율 = 이자 / 대출금액

- 만기미상환 반대매매

- 반대매매(강제판매)수량 = $\frac{\text{대출금액+이자}}{\text{반대매매 기준 가격*}}$
 - 반대매매 기준가격 = [전일종가×(1-종목등급별 할인율^{가}) ÷ (1+수수료율) × {기준환율^{나}×(1-환율할인율^{다})}]

가. 종목등급별 할인율

구분	종목등급	할인율
해외주식	A등급	15%
	B등급	15%
	C등급	20%
	D등급	20%
	E등급	20%
	F등급	20%

나. 기준환율

-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당일 기준환율로 적용합니다.

다. **환율 할인율 : 5%**

* (예시) 전일 토스증권 달러($) 기준환율이 1,000원인 경우 5% 할인된 950원을 기준환율로 반대매매수량을 산출 후 반대매매 처리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수량이 반대매매 될 수 있습니다.

■ ④ 담보증권/담보 외 증권 반대매매 순서

- **담보증권**
 - **담보증권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반대매매(강제판매) 후 결제일에 매도정산금액이 입금되면, 원화로 자동 환전하여 대출금 상환에 사용합니다.**
 - 반대매매 시 결제일에 자동 환전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90 ~ 95% 환전 수수료 우대가 적용됩니다. 단, 외국환은행 사정에 따라 해당 범위보다 높거나 낮은 우대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고객 지정 종목	• 담보증권 내에서 종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만기미상환으로 인한 반대매매의 경우, 해당 대출의 담보증권이 최우선 반대매매 됩니다.(종목변경 불가) • 반대매매 당일 한국시간 기준 23시 20분(서머타임 적용 시 22시 20분)전까지 반대매매 종목변경이 가능합니다. • 담보부족에 따른 반대매매의 경우 종목별 지정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른 사유(만기미상환, 미수)로 인해 매도될 주식 금액을 감안하여, 담보부족이 해소되는 수준의 담보부족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동일한 담보주식이지만 대출일이 다른 경우 만기일이 빠른 순서로 산정됩니다.
2) 1) 에서 미지정인 경우	• 다음 순서로 진행 가. 대출 만기일자 빠른 종목 나. 대출 만기일자가 동일한 경우, 종목코드 알파벳 빠른 종목 • 만기미상환 반대매매와 담보부족 반대매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만기미상환 사유로 매도될 주식 금액을 감안하여, 담보부족이 해소되는 수준의 담보부족금액을 계산하고 반대매매를 진행합니다.

 - 주식 분할이나 병합 등 권리처리 후 대출건별로 배정되는 **담보주식 수량이 0주인 대출건은 자동으로 임의로 전액 현금상환 처리되어 외화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보유한 원화/외화 예수금으로 미수금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미수 발생에 따른 반대매매(강제판매)가 실행**됩니다.

 * 환율은 50% 환전 수수료가 우대 적용 됩니다.
 * 반대매매(강제판매) 처분 기준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결제 불이행 시 반대매매(강제판매) 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미수에 대한 연체료도 부과됩니다.
 * 당사 홈페이지(https://corp.tossinvest.com → 고객센터 → 증권 업무 안내 → 권리)

 - **담보증권이 거래정지로 인해 반대매매가 불가한 경우 반대매매 당일 대출금은 상환처리되고 외화 미수금액이 발생합니다.** 익거래일까지 외화 미수금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미수동결은 없지만 미수 발생에 따른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반대매매 처분 기준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결제 불이행 시 반대매매 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담보 외 증권**
 - 담보증권의 반대매매 후 매도정산금액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결제일에 외화 미수금액이 발생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외화로 미수금을 변제하여야 하며, 외화 미수금액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결제 불이행 시 반대매매(강제판매) 순서로 담보 외 증권 중 해외주식이 반대매매됩니다. 미수 발생에 따른 미수동결은 없습니다.

■ ⑤ 통지방법

- **추가담보 납입요구 통지는 앱 푸시/알림과 (알림톡(카카오톡) or SMS)**로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징구 없이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앱 알림/푸쉬 및 (알림톡 or SMS)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 ⑥ 채무 충당 순서

- **반대매매(강제판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1) 처분 관련 비용 → 2) 연체이자* → 3) 이자 → 4) 대출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 연체이자: 외화 미수금액 발생에 따른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발생

추가 기한의 이익의 상실

- 다음 ① ~ 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대출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기한의 이익 상실)**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하는 즉시 고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①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③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④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⑤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에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주식담보대출거래는 **취급 보수 등 별도 수수료가 없으나 대출이자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주식담보대출 거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매도로 상환하는 경우 또는 반대매매(강제판매) 시 해당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corp.tossinvest.com → 고객센터 → 증권 업무 안내 → 수수료 및 증거금 → 위탁매매 수수료)를 따릅니다.

약정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약정 해지

- 대출약정은 고객이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대출실행금액이 남아 있고 원리금 (대출금 + 이자) 전액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대출약정해지는 불가**합니다.
- 담보증권을 매도상환을 통해 전액 상환할 경우, 매도 결제일까지 대출약정해지는 불가합니다.
 * 대출약정 해지경로 : 토스증권 앱 → 내 계좌 → 주식담보대출 → 관리 → 대출 해지하기 클릭

연체에 따른 불이익, 위험성 등 중요 정보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 **매도상환 또는 반대매매 후에도 대출금이 남아있는 경우, 결제일에 외화 미수금이 발생됩니다. 외화 미수금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외화 미수금에 대해 연체기간만큼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이자율은 해외주식의 경우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 따른 외화 미수금액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과 동일합니다.
-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대출거래 만기 연장 불가, 금융 거래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담보대출 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

-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도 하락 시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대출 사용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대출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시 관련법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되며,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타 금융기관에 제공됨에 따라 **고객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 거래의 위험성

- 주식담보대출은 일반 현금거래와는 달리 **투자원금에 비해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지만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다음의 대출거래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담보대출은 예측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초과 손실 위험>
미국 주식은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대출비율 65%인 경우 투자원금 1,000만 원으로 650만원을 대출 받아 총 1,650만원 주식을 매수한 경우 (최초 담보비율 약 253%)

→ 만약 대출 당일 주가가 -70% 폭락한다면, 주식 평가액은 495만 원이 됩니다. 이때 보유한 주식을 팔아서 대출원금 650만 원을 갚기에는 155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총 손실은 1,155만원으로 투자원금(1,000만 원) 전체를 잃고 갚아야할 채무 155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000원 가정)

-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140%) 미만인 경우 추가 담보를 납입해야 하나 미이행 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을 부담합니다.
- 회사는 대출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대출거래가 있는 고객은 대출거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 추가대출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합니다.

※ 주식담보대출 거래 고객께서는 위 내용이 주식담보대출 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담보대출 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본인의 투자성향과 감당 가능한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거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주식담보대출 신청 시 담보로 제공할 증권과 대출금 등이 맞는지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 회사는 필요한 경우 주식담보대출 이자율, 연체이자율, 대출비율,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주식담보대출 이자율 등을 포함하여 주식담보대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3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약정한 날에 주식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각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담보대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 → 금융상품비교공시(dis.kofia.or.kr) → 금융투자회사공시 → 특정공시 →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자율)

상속명의변경 시 대출약정 제한

- **상속명의변경 시 미상환 대출금이 있다면 먼저 미상환 대출금을 전액상환 완료 후 상속명의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 상속명의변경 시 기존 유지되었던 주식담보대출 약정은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상속명의변경 완료 후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상속인 명의로 대출약정 체결이 필요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고객 제한

- **기준일자를 당일로 하여 잔고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 대출실행, 대출상환, 출금, 출고가 불가**합니다

대출 중단 및 제한

- 회사는 **관계법령, 금융 감독당국의 조치, 담보대출 총 한도 초과 등 그 밖의 회사가 담보대출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규 주식담보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스증권 홈페이지 고객 공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 **특정 종목에 대출 신청이 집중될 경우, 종목별 대출한도 소진으로 인해 해당 종목의 신규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 관련 유의사항

권리 발생 시 담보평가 인정 기준

- 권리평가금이란 권리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미입고된 주식에 대해 권리 효력발생일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주식의 일반/대출 잔고를 합산하여 임시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권리처리가 완료되어 주식이 입고되면 임시 반영되었던 권리평가금은 평가에서 제외되며, 실제 주식 잔고로 평가됩니다.
- 권리평가금은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권리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담보평가금액 하락으로 담보부족에 따른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권리평가금은 합병, 분할 등 주식 수의 변동이 발생하는 권리에 한하여 생성**되며, 그 외 권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식 수의 변동이 발생하는 권리이더라도 상장이 예정된 주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 신주에 대한 권리평가는 회사 운영정책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당의 경우, 배당형태 및 배당금액의 크기에 따라 일부 배당에 대해 권리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식분할 등의 권리를 선반영 처리하는 경우 대출금 현금상환은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선반영 이외의 권리 처리 중에는 대출금 현금상환이 가능하지만 설정된 담보주식의 해제는 권리처리 완료 시점까지 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권리 처리 과정에서 담보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제3의 종목으로 변경, 또는 담보주식의 출고 및 입고 시점이 상이한 경우 대출금이 현금상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외화 미수가 발생할 수 있고 연체료 부과 및 반대매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병합 등 권리처리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증권업무안내 → 권리 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자료열람 요구권 안내

개요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토스증권에게 당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차	•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의 목적(민원/소송과 해당 자료 간의 연관성 등 기재), 범위(열람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자료 기재), 방법을 기재한 자료열람 요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을 요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 다만,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료가 당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개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하면서 판매한 금융상품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금융상품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상 금융상품이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이여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당 계약을 해지했을 때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절차	•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위반사실, 법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계약해지요구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후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계약해지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도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해지요구를 당사가 수용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상실하며, 당사에게 해당 금융상품의 원상회복의무는 없습니다.

청약철회권 안내

개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과정 등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로 투자성상품이나 대출성상품 가입 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 금융상품	대출성/보장성/투자성상품에 대해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절차	• 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로부터 14일(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 매도상환 이력이 있거나 반대매매(강제판매) 등의 발생한 경우 청약철회권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등(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 토스증권 고객센터(02-1599-7987)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 등 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권 행사 시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과의 차이	• 대출 중도상환이란? • 정의 :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 • 행사기간 : 대출 만기 전으로, 행사기간에 제한이 없음 • 효과 : 대출이 상환되며, 대출 이력은 삭제되지 않음 •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 상품별 차등 운영(당사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청약철회권 행사와 중도상환과의 차이는 "<참고1> 청약철회권 행사와 중도상환 비교안내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 1> 비교 안내서

• 청약철회권은「금융소비자보호법」제46조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권리로, 해당 안내서는 중도상환이 청약철회보다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두 경우를 비교하여 선택하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1.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14일 이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구분	대출 청약철회	대출 중도상환
유리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 기록 삭제	• 부대반환 비용 없음
불리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대출 관련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 대출 기록 미삭제

2. 14일 이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구분		대출 청약철회	대출 중도상환
비용1)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 잔존기간에 대해 발생
	반환 부대비용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	-
신용평가2)	대출기록	삭제	미삭제

1) 통상 "반환 부대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청약철회가 유리

- 인지세를 부담한 예금담보대출, 한시적 영업전략 등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시에만 반환 비용이 발생하므로 중도상환이 유리

2) 중도상환 시 대출(및 상환)이력 유지되나, 청약철회 시에는 이력삭제 ⇒ 청약철회가 유리

-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이력, 신용거래기간 항목의 경우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

3.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시 금융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예시 1) 대출종류 및 금액 : 예탁담보대출 7천만원, 부대비용 : 인지세 35,000원

구분		청약철회	중도상환	비교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반환 부대비용	35,000원	-	인지세 당사 부담분 반환
	총비용	35,000원	없음	중도상환이 유리
신용평가	대출기록	삭제	미삭제	

⇒ 비용측면에서 대출 중도상환이 유리(단,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대출이력이 삭제되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나,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대략적인 금액이므로 실제 청약 철회 또는 상환 시 변동될 수 있음

※ 당사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나, 대출이용기간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징구함.

<참고 2> CD수익률 설명서

- CD수익률 설명서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CD수익률 사용기관이 작성하여 일반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합니다)와 CD수익률과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CD수익률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중요내용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참고자료입니다.

Ⅰ. CD수익률의 내용 및 용도

1. CD수익률의 정의

-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 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CD수익률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요지표로 지정('21.3월)되었으며,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은 2023년 10월 2일부터입니다.

2. CD수익률의 용도

- CD수익률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계약·거래에서 해당 계약·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CD수익률 적용 계약의 범위
 대출,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상품, 신용카드 발급, 시설대여, 할부금융, 어음 할인·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자금예탁, 종합금융회사·단기금융회사 발행 어음 등 (근거: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12① 및 감독규정 §13)

Ⅱ. CD 기초수익률의 내용 및 산출기준

1. 기초수익률 및 제출기관의 정의

- 기초수익률이란 금융거래지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출기관이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한 10개사를 말합니다.

2. 적격거래 선정기준

-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거래를 적격거래라 하며 적격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일 것
- 건 별 거래량이 100억원 이상일 것

III. CD 기초수익률 산정방법·절차 및 잠재적 한계

1.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 제출기관은 다음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가능한 기초수익률을 제출합니다.
- Level 1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금리)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의 수익률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 (Level 1 산출 불가시)

- Level 2 (발행물·경과물을 이용한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 :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당일 발행물(2·4·5개월), 경과물(2·3·4·5개월) 거래의 수익률을 선형보간 및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산출

⇩ (Level 2 산출 불가시)

- Level 3 (전문가적 판단) : 당일 CD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 산출
 i. 표준만기: 2개월물(45~79일), 3개월물(80~100일), 4개월물(101~135일), 5개월물(136~165일)

2. CD수익률의 산출 절차

- 협회는 제출기관이 제출한 기초수익률 중 상하 각 1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하며 산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담당기관	비고
기초수익률 제출	제출기관	16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에 16시 15분까지 제출
기초수익률 검증	협회, 제출기관	미제출기관과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 등(이하 '오류등')이 의심되는 제출기관에 확인 및 시정 요구
CD수익률 산출·공시	협회	제출된 기초수익률의 상·하 1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CD수익률 산출 및 16시 30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3. CD수익률의 산출의 잠재적 한계

- CD수익률 산출은 거래내역과 전문가적 판단기준에 따라 수행되나, 잠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CD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점

Ⅳ. CD수익률 산출과정 오류 등의 처리

- 협회는 산출업무의 수행 중 오류 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합니다.
- 오류 등이 협회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왜곡·조작의 경우) 해당 직원의 산출업무 수행 중지
- 오류 등의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①과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오류 등이 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 해당 제출기관에 대한 신속한 정정 및 이에 따른 기초수익률 재제출 요구
- 정정 및 해당 정정을 반영한 CD수익률 산출
- ②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 (③에 따른 조치사항) 관리위원회 보고
- (중요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보고
- 협회는 산출과정 뿐 아니라 공시 후에도 오류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공시된 CD수익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공시한 CD수익률에 오류등이 확인된 경우로 다음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CD수익률을 수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미 공시한 CD수익률 수치와 수정 공시하려는 경우의 CD수익률 수치 간 차이가 백분의 3퍼센트 포인트. (0.03% point)를 초과하는 경우
- 공시한 당일의 17시 30분까지 수정 공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Ⅴ.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의 중요 사항 변경 및 관련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1. 중요 사항 변경의 범위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관련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거래
- 기초수익률 산출 및 제출
- CD수익률 산출 방법 및 절차
-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방법 및 절차
-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 수행절차
-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및 CD수익률의 수정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등

2.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에 미치는 영향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CD수익률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
-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정 공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이후에 오류 등이 발견되어도 수정 공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Ⅵ. 비상사태 및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1. 비상사태의 범위

- 협회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여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CD수익률 산출·공시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어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2.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관련 금융계약에의 영향

-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고객과의 협의된 대체금리로 CD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계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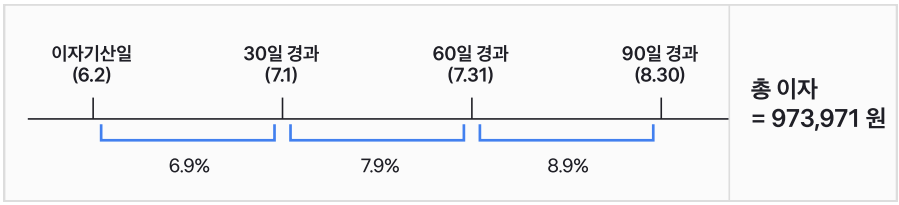
Ⅶ. 산출업무 중단 시의 비상계획

- 비상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의 산출업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1차 심의·의결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산출업무 중단 사유·시기 등의 공시 및 의견 수렴
-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및 반영 여부 결정
- 산출업무 중단 여부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2차 심의·의결
- (산출업무 중단이 결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신고
- 산출업무의 他기관 이관 또는 산출업무의 잠정 수행 등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 이행
-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가능한 대체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 근거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
-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메일, 홈페이지 공시 등)
- CD수익률 설명서의 세부 안내는 토스증권 고객센터(02-1599-798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담보유지비율	• 대출거래시 담보증권의 시세변동으로 인한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당해 대출거래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
반대매매 (강제판매)	• 대출거래에 있어서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증권을 매도하여 차금을 수수함으로써 청산하는 행위
대용가격	• 증권의 담보가치를 의미하며 증권을 매매할 때 증거금을 현금 대신 증권으로 사용 시 담보로 인정하는 해당 증권의 가격
체차법	• 대출거래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 대출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예시>  ※ 체차법에 대한 각각 예시의 총 이자는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90일(6.2~8.30)을 가정하여 산출함.